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42

발의연월일: 2021. 7. 16.

발 의 자:소병철・김정호・박성준

서삼석 · 안호영 · 오영환

이장섭 · 임호선 · 장철민

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죄를 범한 경우 전시와 평시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및 사망사건에 대한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페 의혹 등으로 인하여 군경찰 및 군검찰은 물론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에 비추어 일반 병사들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현저히 고양된 국민 일반과 군 인들의 권리의식에 맞추어 군사법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 에서 탈피하여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 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2002헌마193 결정).

이에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군사법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군인 등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되,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제2조 등).

법률 제 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신분적 재판권)"을 "(재판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를 범한 사람 및 그 미수범
- ③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죄사건 중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군사법원에 해당 사건의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편의 제목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비상계엄 지역의 특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	제2조(재판권) ①
원은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	<u>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u>
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나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의 죄를 범한 사람 및 그 미
	<u>수범</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u><신 설></u>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의 범죄사건 중 국가의 안전보
	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
	건에 한정하여 군사법원에 해
	당 사건의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	<u><삭 제></u>
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	
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	

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 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5편 전시·사변 시의 특례

제5편 비상계엄 지역의 특례